

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만, 두발의 자유가 기본적 권리이고 그 제한이 예외적인 이상 두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본 질적 내용 또한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당사자 간에 합의된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상태나 행위만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두발제한이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된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목적이 통제의 편의성이 아닌 청소년의 보호와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 시 강제 이발과 같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규제의 정도 또한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4. 제도개선 방안

가. 학생두발 관련 제도와 관행을 학생인권 보호에 합치되는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여부와 정도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일차적인 결정권을 부여하고 학생이 교사, 학부모와 동등한 지위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최종결정과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절차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 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런 점에 비추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자율화 여부 및 규제의 범위와 지도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라. 그러나 각급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도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이러한 제도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협의절차가 요식화, 형식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실시한 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학교생활규정이 개정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한 경우와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학생회 대표들을 통해서

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각각 전체 답변 학생 중 40% 이상이었고,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두발관련 학칙이나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 한편, 일반적으로 학생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내용의 합리성 및 기본권 보호원칙에의 부합성 등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바.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는 당사국이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 특별히 강제이발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더이상 이러한 비인권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와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1.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2. 학생의 두발에 대한 제한은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과 절차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합리적 과정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행의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인적 자원부나 각 시·도 교육청의 지도·감독 또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자료 4

법에 나타난 학생 인권 관련 내용

1) 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항	비고
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불가침의 개인의 기본적 인권	제10조	
2	평등권 성 종교 신분 차별 금지, 특권 금지	제11조	
3	신체의 자유 -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처벌, 보안처분 금지, - 고문, 불리한 진술 강요 받지 않음 -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 구속적부심 청구 권리	제12조	
4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 금지, 연좌제 금지	제13조	
5	거주 이전의 자유	제14조	
6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제15조 제16조	
7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제17조	
8	통신의 비밀	제18조	
9	양심의 자유	제19조	
10	종교의 자유	제20조	
11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21조	
12	학문 예술의 자유	제22조	
13	재산권	제23조	
14	선거권, 공무담임권	제24조 25조	
15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26조 제27조	
16	보상청구권, 배상청구권, 범죄피해 청구권	제28조 제29조 제30조	

17	교육받을 권리 의무 무상교육 권리	제31조	
18	근로의 권리 여자와 연소자 특별 보호	제32조 제33조	
19	인간다운 생활 권리 청소년 복지 향상	제34조	
20	환경권	제35조	
21	혼인과 가족, 보건	제36조	
22	헌법에 열거 안된 권리(無名權), 권리 제한의 한계	제37조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8915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제3조	
2	교육의 기회 균등	제4조	
3	학생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제5조	법령에 의거
4	정치적 파당적 교육 금지, 종교 교육 제한	제6조	
5	의무교육	제8조	
6	학교 교육의 공공성, 창의성 인성 전인적 교육	제9조	
7	학생의 인권 존중되고 보호, 교육내용, 방법, 시설은 학습자의인격 존중	제12조	
8	부모 등 보호자의 의무	제13조	
9	교원의 의무	제14조	
10	남녀 평등 교육	제17조의 2	
11	특수교육, 영재교육, 직업교육	제18조 제19조 제20조	
12	학생 정보의 보호 원칙	제23조의 3	
13	학생의 건강 및 복지	제27조	
14	학비 보조 및 장학	제28조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17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학교의 종류	제2조	학생의 범위 관련
2	학교 규칙(학칙) 제정 및 인가	제8조	
3	의무 교육, 취학 의무, 고용자의 의무	제12조~15조	
4	의무교육 교육비 보조	제16조	
5	학생 자치 활동의 권장 및 보호	제17조	
6	학생 징계시 유의점 퇴학의 제한, 학생 등 의견 진술	제18조	
7	재심청구,	제18조의 2	
8	학생인권의 보장	제18조의 4	
9	전문 상담 교사 배치	제19조 의 2	상담받을 권리
10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습 부진아 교육	제27조 제28조	능력에 따른 교육
11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제60조의 2, 3	

4) 청소년 기본법[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 고
1	청소년의 지위 및 육성의 이념 -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리 보장 -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함 - 보나 나은 삶을 누림 -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국가 사회에 필요한 건전한 민주 시민	제2조의 ①	
2	청소년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 - 청소년의 참여보장 -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2조의 ②	
3	청소년 관련 용어의 정의 청소년,	제3조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단체		
4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성	제4조	
5	청소년의 권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자기 발전 추구,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의 책임 자기 능력 계발, 건전한 가치관, 가정 사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제5조	
6	가정의 책임 유해 매체물로 부터 보호, 무관심, 방치, 억압, 폭력으로 인한 가출 비행의 방지	제6조	
7	사회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7조	
8	청소년 시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 육성 기구, 청소년 지도위원 등	제19조 ~ 제27조	
9	청소년 단체 및 지원 기구	제28조 ~ 제47조	
10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활동의 지원,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청소년복지의 향상,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제47조 ~ 제52조	
11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우선 배려	제49조의 ②	
12	청소년육성 기금의 사용처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청소년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55조의 ①	기금을 지원 받을 권리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77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청소년 보호의 의미	제1조	
2	청소년 보호 관련 용어의 정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물건,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 폭력	제2조	
3	청소년 보호 위한 가정의 역할과 책임	제3조	
4	청소년 보호 위한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제4조 제5조	
5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	제10조	
6	방송 및 광고의 제한	제19조 제20조	
7	청소년 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제 16조	
8	청소년 유해 행위의 금지 -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제26조 의 2,3	유해행위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
9	청소년 보호센터의 기능	제33조 의 2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 고
1	특별지원청소년의 의미 조화로운 성장과 정산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제2조	
2	청소년의 인권 보장 - 인종, 종교, 성,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제3조	
3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4조	
4	청소년의 우대권 국가 등이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이용료의 면제 및 할인	제6조	
5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제8조 제9조 제11조	
6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2조	
7	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 교육적 선도의 실시	제14조 제15조 제16조	

8)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03.14 법률 제8887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 고
1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의 의미 - 피해 학생의 보호 -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 조정 - 학생 인권 보호, 건전한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		제1조
2	국가 및 자치 단체의 의무	제4조~8조	
3	교육감의 의무	제9조	
4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제10조 제11조	
5	전문 상담교사 및 책임교사 배치, 폭력 예방교육	제12조 제13조	
6	피해 학생의 보호	제14조	
7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5조	
8	분쟁 조정 및 학교장의 의무, 신고의무	제16조~18조	
9	비밀 누설의 금지	제19조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청소년 성보호의 의미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 1, 2, 3	
3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알선영업 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주행 등	제5~10조	
4	범죄 대상 청소년 및 가해 청소년의 선도 보호	제13조~19조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예방	제20조~22조	

9) 청소년 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청소년 활동 관련 용어의 정의	제2조	
2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4조	
2	청소년 활동의 보장 및 지원	제5조~9조	
3	청소년 활동 시설	제10조 제11조	
4	청소년 수련 활동의 지원	제34조~36조	
5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	제53조~57조	
6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전통문화 계승, 청소년 축제, 동아리 활동, 자원 봉사 활동	제60조~65조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가정 폭력 등의 의미	제2조	
2	국가등의 책무	제4조	
3	가정 폭력 예방 교육, 아동의 취학 지원	제4조의 3,4	
4	보호시설의 업무	제8조	
5	피해자 의사의 존중	제9조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인권의 중요성 모든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	제1조	
2	용어의 의미 인권, 평등권 침해, 성희롱, 장애	제2조	
3	인권위원회의 지위 및 업무	제3조 제19조~27조	

11)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일부개정 2007.8.03 법률 제8580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법의 목적 :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	제1조	
2	폭력 사건에 관한 비밀 엄수 의무	제18조	
3	보호 처분의 결정 등	제40조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9122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법의 목적 건강한 출생, 행복과 안전 위한 복지 보장	제1조	
2	용어의 정의 아동, 아동학대, 가정 위탁 등	제2조	아동: 18세미만
3	차별의 금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 안정된 가정환경, 행복한 성장	제3조	
4	아동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	제4조~13조	
5	아동 복지시설의 종류 및 활동 내용	제16조	
6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	제29조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 법률

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법률 제8483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5.25, 법률 제8483호)	
제4조 (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회통,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1, 법률 제8974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66호 신규제정 2008. 04. 10.)
제3조 (정의)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제13조 (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회통,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 (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

제8조(교육책임자 제공 정당한 편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배치)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p>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 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경우: 독립된 장애인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p> <p>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p>		<p>제49조 (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p>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p>

<p>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p> <p>제50조 (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3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p>
-------------------------------------------------------------------------------------------------------------------------------------------------------------------------------------------------------------------------------------------------------------------------------------------------------------------------------------------------------------------------------------------------------------------------------------------------------------------------------------	-----------------------------------------------------------------------------------------------------------------------------------------------------------------------------------------------------------------------------------------------------------------------------------------------------------------------------------------------------------------------------------------------------------------------------------------------------------------------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국·공·사립 특수학교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
-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제1호다목 외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m²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다만,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m²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8. 11.

발의자 : 권영길 의원

제안이유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은 체벌, 조기등교, 두발규정, 개인인격 침해 등이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일어나고 있음. 학생 또한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적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함에도 실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실정임. 또한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기에 금지규정을 명문화 하고, 관련 조사와 교육 사업에 대한 입법화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 나. 육체적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 다.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라.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5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학교의 장과 교사는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생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는 아니된다.

제18조의5 내지 제1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2.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3.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5.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제18조의6(인권교육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국회와 시·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초·중등교육법</u> 제18조(학생의 징계) ①(생 략) <u>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u> <u><신 설></u>	<u>초·중등교육법</u>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현행과 같음) <u>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u> <u>③학교의 장과 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생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는 아니 된다.</u> <u>제18조의5(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u> <u>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u> 1.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 시키는 행위 2.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u><신 설></u>	

〈신 설〉

3.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5.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다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학습부진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 제18조의6(인권교육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국회와 시·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부 록

총 목 차

IV. 부 록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총 목 차

청소년 헌장

● 청소년 헌장 ●

-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 가정 · 학교 ·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 주거 · 의료 ·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 · 성별 · 종교 · 학력 · 연령 ·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 · 학교 · 사회 · 국가 ·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유엔 어린이 · 청소년 권리협약

*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유엔 어린이 · 청소년 권리조약' 가운데 주요 조항만을 뽑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부 록 3

* 세계인권선언 원문과 국제앰네스티, 유니세프의 축약본을 참조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이 쉬운 말로 고쳐 쓴 것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전 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기에,

인권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 없는 세계의 도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으로 선언되어 왔으기에,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여러 국가 사이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유엔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평등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더욱 광범한 자유 중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고자 결의하였기에,

가입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 및 준수의 촉진을 이루어내고자 서약하였기에,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그러한 서약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따라서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이 이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가입국 자신의 인민들과 자국의 통치하에 있는 인민에게도 이들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교육을 통하여 촉진하는 일 및 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하도록 국내적 및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이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다.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 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괴로운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제 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및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이 결정될 때에 독립된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는 데 있어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 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 를 가진다.
2.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작위나 부 작위로 인하여 유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때의 형벌보다 더 무거 운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12조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러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경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하고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이나 다른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에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체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원용될 수 없다.

제 15조

1. 누구에게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 는다.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때에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 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 받지 않는다.

제 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는 통치권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해 표명되어야 한다. 이 선거는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비밀투표 또는 그것과 동등한 자유가 보장되는 투표절차에 의해 치러져야 한다.

제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에 의해 또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23조

-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적출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제 26조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 27조

-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조

- 모든 사람은 그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이 그 사회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 30조

이 선언의 모든 규정은,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 선언에 열거된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 문

본 협약의 당사국 정부는,

- (a) UN 헌장에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 를, 전 세계 자유, 정의와 평화의 근간으로 인지해, 이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 (b) 세계 인권 선언 및 여러 국제 인권 관련 협약에서, 모든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천명, 동의한다는 점을 인지하며,
- (c)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및 상호 의존성과 상호관계성,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차별 없이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 하며,
- (d)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및 처벌 반대 협약, 아동 권리 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상기하며,
- (e) 장애의 개념이 발전해 나간다는 점과, 장애가 손상(impairment)을 입은 사람과 이들이 타인과 동등하게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 장벽 간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지하며,
- (f) 장애인에게 보다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 계획 및 실천(actions)을 진통하고 구성, 평가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 관련 세계 실천 프로그램 및 장애인의 동등한 기회에 대한 표준 규범(standard rules)에 명시된 원칙, 정책 및 지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며,

- (g) 지속 가능 개발과 관련된 전략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써, 장애인 문제(issue)의 주류화(mainstreaming) 중요성을 인지하며,
- (h) 장애를 이유로 해서 행해지는 모든 차별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임을 또한 인지하며,
- (i) 나아가 장애인의 다양성을 인지하며,
- (j) 보다 집중적인 지원(intensive support)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 보호할 필요성을 인지하며,
- (k) 이러한 다양한 기제와 공약(undertakings)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써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장벽에 직면하고,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 (l) 모든 국가,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며,
- (m) 장애인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valued existing), 자신들의 공동체(community,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안녕(well-being)과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장애인이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 온전한 참여를 완전하게 향유 하는 상태를 증진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소속감을 고양하고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및 빈곤 철폐에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 (n)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비롯한 각자의 자율성과 독립성(independence)이 장애인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며,
- (o) 장애인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비롯한 여러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며,

(p)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및 기타 견해, 국적, 민족(ethnic), 태생적 출신 및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연령 및 기타 위상 등을 이유로, 다중적 차별 혹은 가중된 형태의 차별을 받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조건에 대해 우려하며,

(q)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들이 보다 심각한 위험에 자주 직면하며, 가정 안팎의 폭력에 시달리고 상해를 입거나 혹은 학대를 당하고, 방치되거나 혹은 소홀히 대우 받고, 혹사 당하거나 착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며,

(r) 장애아동이 타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아동 권리 협약의 당사국 정부가 수용한 의무 사항을 상기하며,

(s) 장애인의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의 온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서 성별 관점을 통합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t) 장애인의 대다수가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빈곤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할 필요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u) UN 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에 대한 온전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평화와 안보 상황 및 적용 가능한 인권 기제를 준수하는 것이, 특히 무력 충돌 상황 및 외국군 점령기의 장애인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하며,

(v) 장애인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과 보건, 교육 및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며,

(w) 각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및 타인에 대한 의무를 가진 존재로써, 국제 인권법(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에서 인지하는 권리를 증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자각하며(realizing),

(x) 가족은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사회 구성의 단위이자,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확신하며, 더불어,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이 권리의 동등하고 온전하게 향유하는 것을 돋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은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며,

(y)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협약을 통해, 장애인이 경험하는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내고,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에서 공히,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장애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며,

다음에 대해 동의 한다.

1조 - 목적

본 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온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 존중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혹은 감각적으로 장기적인 손상을 입어, 타인과 동등하게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벽에 직면하게 되는 사람을 포괄(포함)한다(include).

2조 - 정의

“의사 소통(communication)”에는 언어, 자막(display of text), 점자 및 촉각 의사 소통, 확대 인쇄,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다중 매체), 평이한 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 통신 기술을 비롯한 대안적이고 대체적인 의사 소통의 형태, 수단 및 형식이 있다.

“언어(Language)”에는 구어적 언어와 손짓 및 몸짓 언어(signed language)와 기타 다른 형태의 비 구어적 언어가 포함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은, 장애를 이유로 해서,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혹은 기타 다른 영역에서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인정 받고, 향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무효화(nullify)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구별, 배제 및 제한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처우(reasonable accommodation)에 대한 부정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 이에 해당한다.

“합리적 처우(Reasonable Accommodation)”란, 특정한 경우에 필요하다면, 지나치게 많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필수적이고 적합한 수정 및 조정을 통해,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온전히 향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별도의 개조나 특수한 디자인을 고안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는 제품, 환경 및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특정한 장애인 집단이 필요로 하는 보조 기구(assistive devices)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3조 - 일반 원칙

본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천부적 존엄성,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성(독립성: independence)에 대한 존중;
- (b) 비차별;
- (c)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사회 속에 포함됨(inclusion in society);
- (d) 장애가 갖는 차이를 존중하고, 장애를 인간의 다양성 및 인간다움의 일부로 인정;
- (e) 균등한 기회;
- (f) 접근성;
- (g) 남녀 평등;
- (h) 장애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evolving capacity) 존중 및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에 대한 장애 아동의 권리 존중

4조 - 일반 의무

1. 당사국 정부는 모든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온전한 실현을 증진, 보장해야 한다:
 - (a) 본 협약에서 인지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합한 법적, 행정적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시키는 기존 법제도, 규범,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기하기 위해, 법 제도를 비롯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
 - (c)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고려할 것.
 - (d) 본 협약과 상충되는 법령 혹은 관행을 삼가고, 공공 기관 및 기구가 본 협약을 준수토록 할 것.
 - (e) 개인, 기관이나 민간 업체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근절 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
 - (f) 본 협약의 2조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개조 및 최저 비용을 통해 마련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Universally designed) 제품, 서비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보장하며, 이에 대한 사용성과, 표준 및 지침 개발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진흥할 것.
 - (g) 저렴한 비용(affordable)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 개발에 주안점을 둔 정보 통신 기술, 이동 보조, 기구, 보조 기술을 비롯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신기술의 이용성과 사용을 진흥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보장하고 촉진할 것.
 - (h) 신기술을 비롯한 이동 보조, 기구, 보조 기술 및 기타 보조 형태, 지원 서비스 및 지원 시설에 대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accessible)한 정보를 제공할 것.
 - (i) 본 협약에서 인지한 권리와 관련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직원에 대한 훈련을 향상함으로써, 이러한 권리가 보장하는 지원 및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제공하도록 할 것.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해, 본 협약에서 명시한 내용 가운데, 국제법에 근거해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사항을 훼손하지 않고,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각 당사국 정부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의 틀 안에서 모든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본 협약 이행을 위해 법률 및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과정과, 장애인 관련 이슈를 다루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 대표 기관을 통해, 장애 아동을 비롯해, 해당 장애인과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하며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본 협약의 어떤 조항도, 당사국의 국내법 혹은 당사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국제법에서 명시된 내용 중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보다 도움이 되는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본 협약의 당사국 정부가 추구하는 법, 협약, 규범 혹은 관습에서 인지하거나 존재하는 근본적인 인권에 대해, 본 협약에서 그러한 권리를 인지하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권리에 제한을 두거나 이 권리 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본 협약의 조항은 어떠한 제한 혹은 예외도 두지 않고, 연방 차원의 모든 주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5조 - 평등과 비차별

1. 당사국 정부는 모든 장애인이 법 앞에, 법 안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에서 명시하는 보호와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2. 당사국 정부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모든 차원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도록,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제도를 통해 보호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3. 평등을 고양하고,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당사국 정부는, 합리적인 처우가 제공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향상시키거나 달성시키는데 필수적인 특별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에 대해, 본 협약은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

6조 - 장애여성

1. 당사국 정부는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다중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며, 이런 맥락에서,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온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 정부는 장애 여성의 본 협약에서 명시하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행사,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온전한 발전, 능력 향상(advancement) 및 역량 강화(empowerment)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조 - 장애아동

1. 당사국 정부는 장애 아동이 타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온전하게 향유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장애 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3. 당사국 정부는 장애 아동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보장하며, 타 아동과 동등하게 이들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 견해를 참고, 반영(give due weight)함으로써, 권리 실현에 필요한 연령별, 장애별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조 - 인식개선

1. 당사국 정부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 (a) 가족 차원에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고양시킬 것.
 - (b) 성별, 연령 및 기타 삶의 모든 측면을 비롯해 장애인과 관련된 고정 관념, 편견 및 해악적인 관행에 맞서 싸울 것.

(c) 장애인의 역량 및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것.

2. 위 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다음을 위해 고안된 효과적인 대중 인식 개선 운동을 주도하고 지속할 것:

(i)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력 배양;

(ii)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사회적 이해도(awareness) 향상

(iii)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노동 시장에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 증진

(b) 아동을 위한 초기 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교육 증진

(c) 모든 언론 매체가 본 협약의 목적과 부합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형상화 하는 것을 독려

(d) 장애인 및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한 인식 개선 훈련 프로그램 증진

9조 - 접근성

1. 장애인이 인생 전반에 걸쳐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삶의 모든 측면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 통신 기술 및 시스템을 비롯한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성 및 도시와 비도시 지역에서 제공되는 기타 공공 시설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타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접근성에 대한 장애 및 장벽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다음에 적용되어야 한다:

(a)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 시설과 직장을 비롯한 기타 옥내 및 옥외 시설

(b) 전자 서비스 및 긴급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 통신(의사 소통) 및 기타 서비스

2. 당사국 정부는 다음을 위해 적합한 조치를 또한 취해야 한다:

(a) 공공 시설 및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 및 지침을 개발, 홍보 및 이 표준과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시

(b) 공공 시설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이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c)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이슈를 다루는 관계자들에게 훈련 제공

(d) 공공 시설 및 건물에 점자 표지판 및 읽기 쉽고 이해가 용이한 형태의 표지판 제공

(e) 건물 및 기타 공공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내, 낭독자 및 전문 수화 통역사를 비롯한 동물 및 인간 지원(live assistance: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제공

(f)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기타 적절한 보조 수단 및 지원 증진

(g)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 신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증진

(h) 초기 단계부터, 접근 가능한 정보 통신 기술 및 시스템을 디자인, 개발, 생산 및 배포하는 것을 증진시켜, 이러한 기술 및 시스템이 최소 비용으로 접근 가능토록 함

10조 - 생명권

당사국 정부는 모든 인간이 생명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조 -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 사태(humanitarian emergencies)

당사국 정부는 국제 인도주의법 및 국제 인권 법을 비롯한 국제법에서 명시한 의무 사항에 근거해, 무력 충돌, 인도주의적 비상 사태 및 자연 재해 발발 상황을 비롯한 위험 상황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조 - 법 앞의 평등(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1.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모든 차원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 인지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한다.
2.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인생 전반에 걸쳐 타인과 동등하게 법적 권한(legal capacity)를 향유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3.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법적 권한 행사시 필요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당사국 정부는 법적 권한 행사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국제 인권 법에 근거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 장치(safeguard)를 제공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 장치는 법적 권한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당사자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당사자의 이익에 상충되지 않으며, 불필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당사자의 상황에 적절하고 알맞게 적용되며, 가능한 단기간 적용되고, 역량 있고 독립적이며 공명 정대한 기관 및 사법 기구의 정기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위 안전 장치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알맞게(비례해: proportionate) 제공되어야 한다.
5. 본 조항 항목 적용의 대상으로써,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재산 및 상속 받은 재산, 자신의 재정 문제 관리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은행 대출, 담보 대출 및 기타 형태의 금융 기관 신용 대출(financial credit)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합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이 임의로 재산을 강탈당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해야 한다.

13조 - 사법 접근성

1. 당사국 정부는, 조사 과정 및 기타 사전 단계를 비롯한 모든 법적 절차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중인인 경우를 포함해, 직간접적 참여자로써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차적이며 연령별로 적합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효과적인 사법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 접근성 보장을 돋기 위해, 당사국 정부는 경찰 및 교도소 직원을 비롯한 사법 행정 기관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 증진시켜야 한다.

14조 - 인간의 자유와 안전(Security)

1. 당사국 정부는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a) 인간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향유
 - (b) 불법적 혹은 임의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으며, 자유를 박탈하는 어떤 상황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장애가 그 이유가 되어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2.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특정 과정에서 자유를 박탈당할 경우, 이들이 타인과 동등하게 국제 인권법에서 보장한 부분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합리적 처우 제공을 비롯해, 본 협약의 목표 및 원칙을 준수해 대우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15조 - 고문 혹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

1. 어느 누구도 고문 혹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해당인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의학적 혹은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고문 혹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

인 처우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 혹은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조 -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당사국 정부는 성별 기반 축면을 비롯한 가정 안팎의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당사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착취, 폭력 및 학대를 피하고, 이를 인지하며 사례를 신고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제공 등, 적절한 형태의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 지원, 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caregiver)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국 정부는 연령, -성별- 및 장애 유형별 보호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모든 시설(facility) 및 프로그램을 독립 기관이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당사국 정부는 착취, 폭력 혹은 학대의 어떤 형태에서든, 그 피해자가 된 장애인에게, 보호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회복 및 재통합 서비스는, 해당인의 건강, 복지, 자존 및 존엄성을 증진하고, 성별 및 -연령별- 특정 요구를 고려한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당사국 정부는 여성과 아동에 주안점을 둔 법률 및 정책을 비롯한 효과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해,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의 사례를 파악하고 조사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소하는 것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

17조 - 인간의 고유성 보호(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person)

모든 장애인은 타인과 동등하게, 자신만의 신체적, 정신적 고유성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18조 -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국적 선택의 자유에 대해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장애인은 국적을 취득하고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국적을 임의로 혹은 장애를 이유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문서 및 신원 관련 기타 문서를 취득, 소유 및 활용하거나, 이주의 자유권 행사를 촉진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출입국 절차(immigration proceedings)와 같은 관련 절차를 활용하는 능력(ability)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장애인은 자국을 비롯해 어떤 국가로 떠날 수 있다.
 - 장애인은 임의로, 혹은 장애를 이유로 자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 장애 아동은 출생 직후 출생 신고 되어야 하며, 출생 후 자신의 이름 및 국적 취득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를 가져야 한다.

19조 -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공동체:community)참여

생활 영위(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본 협약의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한다는 점을 인지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소속되며,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장애인은 거주지 및 자신의 거처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타인과 동등하게 부여받으며, 특정한 삶의 양식을 강요 당하지 않는다.
- 생활 및 지역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및 분리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비롯한 가정내 지원 서비스, 거주지 지원 서비스

및 기타 지역 사회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장애인은 접근성을 갖는다.

- (c)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지역 사회 서비스 및 시설은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도 이용가능하며 이들에 요구에 부합한 형태로 제공된다.

20조 - 개인의 이동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의 최대한 자립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며, 이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자신이 선택한 방식과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촉진;
- (b) 이동 보조기, 기구, 보조 기술 및 동물 및 인간 지원과 매개 수단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토록 해,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
- (c)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 직원에게 이동 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
- (d) 이동 보조기, 기구 및 보조 기술을 생산하는 업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할 것을 권장.

21조 - 의사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성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수화, 점자 및 대안적이고 대체적인 의사 소통 수단 및 본 협약의 2조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 자신이 선택한 모든 기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의 수단과 형식, 형태를 통해, 타인과 동등하게 정보 및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수집하며, 배포 할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포함된다.

- (a) 일반 대중을 위해 마련된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태 및 다양한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기술을 통해, 시의 적절하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장애인에게 제공;

(b) 공적 의사 소통(official interactions), 수화, 점자, 대안적이고 대체적인 의사 소통, 그 밖에 장애인이 선택한 기타 접근 가능한 의사 소통의 모든 수단, 형태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

(c)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에게, 인터넷상 서비스를 비롯해 정보 및 서비스 제공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

(d) 인터넷 정보 제공 업체를 비롯, 대중 매체에게,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장;

(e) 수화 사용을 인지하고 이를 증진

22조 - 사생활 존중

- 거주지 및 생활 양식과 무관하게, 어떤 장애인도 임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사생활, 가족, 가정 및 통신, 기타 의사 소통에 대해 간섭을 받는 대상이 되거나, 자신의 명예 및 명성을 불법적으로 훼손당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이러한 간섭 혹은 공격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 개인의 사생활, 건강 및 재활 관련 정보를 타인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23조 -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당사국 정부는 결혼, 타인과 동등하게, 가족, 부모의 역할(parenthood), 관계를 맺는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결혼 적령기의 장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이 완전히 동의하는 전제하에,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

(b) 자녀의 수 및 터울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을 지며, 자녀의 연령에 따른 정

보 접근성에 대한 권리, 재생산 및 가족 계획 교육이 인정되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제공됨:

- (c) 아동을 비롯해, 장애인은 타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생식 능력을 유지
- 2. 당사국 정부는, 보호자의 임무, 양육자의 임무, 수탁자의 임무 및 자녀 입양 혹은 이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유사한 제도와 관련해, 장애인의 책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이해가 가장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자녀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3. 당사국 정부는 가족 생활 측면과 관련한, 장애 아동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 아동을 은폐, 유기, 방치, 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사국 정부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게 포괄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을 조기에 제공해야 한다.
- 4. 당사국 정부는 사법적 검토권이 있는 주무 관청이 적용법과 절차에 근거해 자녀와 부모의 별거가 아동의 최선 이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부모와 별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의 장애 혹은 부모 중 한명의 장애나 부모 모두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와 별거해서는 안 된다.
- 5. 당사국 정부는 직계 가족이 장애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노력을 다해, 확대 가족(친척) 내에서 대안적인 양육을 제공되도록 하되, 이 또한 불가능할 경우, 지역 사회 내 가족 형태를 갖춘 환경에서 장애 아동이 양육 되도록 해야 한다.

24조 - 교육

1.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인지한다. 이 권리가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당사국 정부는 모든 차원에서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장하고, 평생 학습을 보장해야 하며, 다음을 지향한다:

- (a) 인간 잠재력, 존엄성과 자아가치감(sense of self-worth)의 완전한 개발, 및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 다양성에 대한 존중 강화
- (b) 장애인 당사자의 개성, 소질 및 창조성과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

- (c) 장애인이 자유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2. 이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당사국 정부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a) 장애인은 장애가 이유가 되어 일반 교육 시스템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장애 아동은 자유로운 초등 및 중등 과정 의무 교육에서 장애가 이유가 되어 배제되지 않는다.
 - (b) 장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타인과 동등하게, 통합적이고, 양질의 자유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갖을 수 있다.
 - (c) 각 개별적 요구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가 제공된다.
 - (d) 장애인 교육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은 일반 교육 시스템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 (e) 이러한 효과적인 개별 지원 조치는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부합한 형태로써, 학문적, 사회적 개발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제공된다.
- 3.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정부는 지역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이 생활 기술과 사회 개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당사국 정부는 다음을 포함한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 (a) 점자 학습, 대안 스크립트(alternative script)학습, 대체적이고 대안적인 형태, 수단, 형식의 의사 소통 방식 교육, 적응 훈련 및 이동 기술(orientation and mobility skills) 교육을 촉진하며, 동료 지원(peer support)과 멘토링(mentoring)을 촉진;
 - (b) 수화 학습 촉진 및 청각 장애인 공동체의 언어 정체성 증진
 - (c)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및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교육 특히 이러한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이 가장 적절한 언어 및 각 개인에게 맞는 의사 소통 수단과 방식으로 제공되며, 학문적 사회적 발전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제공된다는 점을 보장;
- 4. 이러한 권리 실현 보장을 돋기 위해서,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 교사(장애가 있는교사)를 비롯해서 교사를 고용할 때, 수화와/혹은 점자에 능숙한 교사를 고용하고, 교육 관련 모든 분야의 전문직 및 종사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

한 훈련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적절한 대안적 대체적 의사 소통 형태, 수단 및 형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테크닉(기술)과 자료가 포함된다.

5.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일반 고등 교육, 직업 훈련, 성인 교육, 평생 학습에 차별 없이 타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처우가 제공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25조 - 건강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최상으로 달성가능한 건강 기준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당사국 정부는 건강 관련 재활을 비롯해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gender-sensitive)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 정부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타인(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주이며, 양질인, 무상 혹은 저렴한 보건 의료 기준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며, 이 기준 및 프로그램에는 성 건강 및 재생산 건강과 인구 비례 공공 보건 프로그램(population-based public health programs)이 포함된다;
- (b) 적절한 형태의 조기 진단 및 개입(intervention)과 추가 장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를 비롯해 특히 장애 유형별로 요구되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아동과 노인에게도 제공한다;
- (c) 이러한 보건 의료 서비스는 농촌 지역(rural areas)을 포함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d) 보건 분야 전문가가 장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는 점을 전제한 경우를 포함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공공 보건 의료 및 민간 보건 의료 차원에서 공히, 윤리 기준에 대한 훈련 및 홍보를 통해, 인권, 존엄성 및 자율과 장애인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 (e) 건강 보험 및 종신 보험이 국내법상 합법일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건강 보험과 종신 보험의 조항상 장애인 차별 적인 요소를 금지한다;

(f) 보건 의료 또는 보건 서비스 혹은 음식이나 수액(fluids)제공 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적으로 이러한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한다.

26조 - Habilitation 및 재활(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1.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 및 인생 전반의 모든 측면에서의 온전한 통합 및 참여를 달성,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동료 지원을 통한 조치를 비롯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 정부는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춰, 포괄적인 Habilitation 및 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강화하며 확장해야 하며, 이 때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

- (a) 가능한 한 조기 단계에 시작하며, 개인의 요구와 장점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 (b) 지역 사회 및 사회의 모든 측면에 참여하고 통합되는 것을 지원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발적 견해에 따라 행해지고, 비도시(rural area)지역을 포함해,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이용 가능하다.
- 2. 당사국 정부는 가활 및 재활 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를 위한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의 개발을 증진해야 한다.
- 3.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가활 및 재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보조 도구 및 기술에 대한 이용성, 지식 및 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27조 - 노동과 고용

1. 당사국 정부는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인지한다; 이 권리에는 장애인이 노동 시장 및 공개적이고 통합적이며 장애인 접근 가능한 노동 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용한 노동을 통해 삶을 일구어 나가는 기회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 때 장애인의 고용 기간 동안 장애인이 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통한 조치를 비롯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 (a) 채용, 고용 조건, 근속 기간, 경력 향상 및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비롯한 모든 고용 형태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b)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 및 동일한 기회, 회통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및 고충 처리를 비롯해, 정당하고 친화적인 근로 조건에 대한 장애인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보호;
- (c)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노동권 및 노동 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
- (d) 장애인이 일반적인 기술적 직업적 지침 프로그램, 직업 소개 서비스 및 직업 훈련 및 지속적 훈련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e)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 기회 및 경력 향상을 증진하고, 구직 및 근속과 복직을 증진;
- (f) 자영업 및 사업, 협력 관계 개발 및 사업 시작의 기회를 증진;
- (g) 공공 부문에 장애인을 고용;
- (h) 소수자 우대 정책 프로그램, 인센티브 및 기타 조치를 비롯한 적합한 정책 및 조치를 통해, 민간 부분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증진;
- (i)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처우가 제공되는 것을 보장;
- (j) 공개 노동 시장에서의 장애인 근로 경험 증진;
- (k)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전문적 재활, 고용 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 증진;
2.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노예 상태 및 강제 노역에 처하지 않으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강제 의무 노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8조 - 적절한 생활 수준 및 사회 보호

1.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적합한 음식, 의복 및 주거를 비롯한

적절한 생활 수준과 생활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 권리 실현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이러한 권리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장애인의 깨끗한 물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적절하고 저렴한 서비스, 기구 및 장애로 인한 기타 필요에 따른 지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
 - (b)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과 소녀 및 장애 노인의 사회 보호 프로그램 및 빈곤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보장;
 - (c) 빈곤 속에 살아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적 지원 및 일시 위탁 간호 서비스를 비롯한) 장애 관련 경비에서 지출되는 국가 제공 지원에 대해 접근할 것을 보장;
 - (d) 공공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
 - (e) 장애인이 퇴직금 및 퇴직 프로그램에 대해 동등하게 접근할 것을 보장;

29조 - 정치적, 공적 삶에 참여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이 권리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향유할 것을 보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직접 혹은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서,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그 기회를 비롯해 정치적, 공적 삶에 효과적이고 온전하게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i) 투표 절차, 투표 시설 및 자료(materials)가 적합하고, 접근 가능하며 이해하기 쉽고 용이하다는 점을 보장;

(ii) 선거시, 어떤 협박도 받지 않고, 장애인의 비밀 투표를 할 권리와 공공 국민 투표를 할 권리를 보호하며,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공직에 임해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모든 공적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호하며, 이 과정에서, 적절하고 판단된 경우, 보조 기술 및 신기술 사용을 촉진:

(iii) 장애인이 선거권자로써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들의 요청에 따라, 투표권 행사시, 장애인이 선택한 사람의 보조를 허용

(b) 장애인이 공적 업무 수행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효과적이고 온전하게 참여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며, 다음을 포함한 공적 업무에 장애인의 참여를 장려:

(i)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협회에 참여, 정치 정당의 활동 및 행정 업무에 참여;

(ii)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각 지역 사회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참가.

30조 - 문화 생활, 오락, 여가 및 스포츠

1.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 생활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접근 가능한 형식의 문화 관련 자료(cultural material)에 대한 접근성을 향유:

(b) 접근 가능한 형식의 TV 프로그램, 영화, 극장 및 기타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향유: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및 관광 서비스와 같은 문화 공연 혹은 문화 서비스 제공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향유하며, 가능하다면 최대한 국가 문화 명소 및 산(mountain)에 대한 접근성 향유

2.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 창출을 위해, 장애인이 자신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 정부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 관련 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비합리적으로 혹은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장벽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법에 근거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수화 및 청각 장애인 문화를 비롯한 자신의 특정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인지 받고 지원 받을 자격이 있다.

5.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오락,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당사국 정부는 다음을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최대로 가능한 만큼, 장애인이 모든 차원에서 주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증진:

(b) 장애인이 장애인 특수 스포츠 및 오락 활동을 구성하고, 개발하며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적합한 지침, 훈련 및 자원 제공을 독려:

(c) 장애인이 스포츠, 여가 및 관광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장:

(d)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비롯한 놀이, 오락,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타 아동과 동등한 접근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장

(e) 장애인이 오락, 관광, 여가 및 스포츠 활동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장

31조 - 통계 및 데이터 수집

1. 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을 시행하기 위해, 정책을 구성·이행하는데, 통계 자료 및 연구 자료를 비롯한 적합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이를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수집 및 보관 과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자료 보호에 대한 법 제도를 비롯한 법적으로 구성된 보호 장치를 준수하며,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 기밀을 보장:

(b) 통계를 수집, 사용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와 통계에 대한 윤리적 원칙 규범을 준수:

2. 본 조항에 근거해 수집된 정보는 적절하게 분리되어, 본 협약의 당사국 정부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을 돋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벽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3. 당사국 정부는 이러한 통계 배포에 대한 책임을 전제해야 하며, 장애인과 기타 비장애인들의 통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2조 - 국제협력

1. 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국가적 노력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국제 협력 및 국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이런 맥락에서, 양국간, 혹은 여러 국가간, 관련 국제 기구 및 지역 기구와 시민 사회 특히 장애인 대표 조직들과의 파트너쉽 하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a) 국제 개발 프로그램을 비롯한 국제 협력이 장애인 통합적이며,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
- (b)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 사례(best practices)의 교환 및 공유를 통하는 등, 역량 구축을 촉진하고 지지;
- (c) 조사 과정에서의 협력 및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에의 접근성을 촉진; 하고
- (d) 기술 이전을 통해, 접근 가능한 기술 및 보조 기술을 공유, 이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는 등 적절하게,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

2. 본 조항의 항들은, 본 협약의 의무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각 당사국 정부의 의무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다.

33조 - 국가 이행 및 모니터링

1. 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조직 시스템에 근거해, 정부 조직의 틀 내에서, 본 협약 이행 관련 문제를 다루는 한 개 이상의 특정 담당 부서를 지정해야 하며, 각기 다른 분야

및 다른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내의 조정조율 메커니즘을 구성하거나, 지정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 정부는 법률 및 행정 제도에 근거해, 당사국 내에 적절한 형태로 하나 이상의 독립 메커니즘을 비롯한 틀을 유지하거나, 강화, 지정 혹은 개설해서, 본 협약 이행을 증진, 보호 및 모니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지정하거나 개설할 때, 당사국 정부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내 기구의 위상과 역할관련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3. 시민 사회, 특히 장애인 대표 조직이 모니터링 과정에 온전히 참여, 개입해야 한다.

34조 - 장애인 권리 위원회

- 1.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장애인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개설되어야 한다.
- 2. 위원회는 본 협약이 발효되는 시점을 기해, 열 두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협약에 대해 추가로 60개국이 비준하거나 가입한 후에, 위원회 위원은 여섯 명씩 추가되어 최고 열여덟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역량을 다해 복무하며, 높은 도덕성을 겸비하고 본 협약이 다른 분야에서 능력과 경력을 인정 받은 자여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할 때, 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의 4조 3항에 명시된 조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4. 위원회 위원은 적절한 지역 안배, 다양한 문명 및 주요한 법 제도, 성별 균형과 장애 전문가 참여 부분을 고려해 당사국 정부가 선출해야 한다.
- 5. 위원회 위원은, UN 사무총장이 주재한 당사국 회의에서 자국 국적을 가진 인가 가운데 당사국 정부가 추천한 후보들 명단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이 회의는 총 당사국 정부 수의 3분의 2(정족수) 이상이 참석을 했을 경우 성사되며, 당선자는 최다 득표자로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에 임한 당사국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로 한다.
- 6. 위원회의 첫 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 시점에서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각 선거일로부터 늦어도 4개월 전까지, UN 사무총장은 2개월 안으로 위원 후보 추

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당사국 정부에게 보내야 한다. 추천된 후보자를 당사국으로부터 수집하면, UN 사무총장은 모든 후보자들을 알파벳 순서로 배치한 명단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때 이 명단에는 각 후보자의 추천 국가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이 명단을 본 협약의 각 당사국 정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일회 재임할 수 있다. 그러나, 첫 회의에서 당선된 당선 위원의 50%는 2년이 지나면 임기를 마치게 된다. 또, 첫 선거 직후, 해당 회의의 의장은 본 조항의 5항에 의거해, 당선자들 가운데 2년 임기를 수행할 위원(총 위원의 50%)을 추첨을 통해 선택해야 한다.
8. 본 위원회의 추가적 6인 위원에 대한 선거는 본 조항의 관련 조항에 의거해, 정기 회의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9. 위원회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을 하는 경우, 혹은 어떤 이유에서건 위원회 위원직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추천했던 당사국 정부는, 본 조항의 관련 부분에 명시된 자질을 겸비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천해, 해당 위원이 채우지 못한 남은 임기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절차 규칙(rules of procedure)을 채택해야 한다
11. UN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본 협약에서 명시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UN 사무총장은 본 위원회의 최초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12.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본 협약에 근거해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들은 총회가 결정한 조건에 따라, 위원회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해, UN 예산에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
13. 위원회 위원들은 UN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UN의 특권 및 면책 관련 협약의 관련 항에 근거해, 편의, 특권 및 면책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

35조 - 당사국 보고

1. 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에서 명시한 의무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및 관련한 진척 정도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본 협약 발효 이후 2년 이내에 UN 사무총장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이후, 당사국 정부는 4년에 한 번 혹은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4. 포괄적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 정부는 후속 보고서에 이전 보고서에 이미 명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마련할 때, 당사국 정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숙고하며, 본 협약의 4조 3항에 명시된 조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5. 보고서에는 본 협약의 의무 사항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난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36조 - 보고서 심의

1. 위원회는 제출된 각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코멘트, 의견 및 권고안 등을 작성, 해당 당사국 정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 정부는 자국이 선택한 정보를 가지고 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 등에 답변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를 당사국 정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만약 당사국 정부가 보고서 제출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근거해, 해당 당사국 정부에서 본 협약의 이행 정도를 심사할 필요성에 대해 통보할 수 있으며, 관련 보고서를 당사국 정부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 정부에게 위 심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당사국 정부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본 조항의 1항을 적용하게 된다.
3. UN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 정부가 이용 가능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4. 당사국 정부는 자국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이용 가능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와 관련한 제안 및 일반 권고안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국 정부의 보고서와 위원회의 의견 및 권고안을 UN의 전문가 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 기타 유관 기구에 전달해서, 기술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던 부분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조 - 당사국 정부와 위원회간 협력

- 각 당사국 정부는 위원회와 협력을 해야 하며, 위원회 위원이 자신들의 임무를 이행시, 이를 지원, 협조해야 한다.
- 당사국 정부와 관계를 맺는데 있어, 위원회는 국제 협력을 비롯해, 본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역량 고양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8조 - 위원회와 다른 기구와의 관계

본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본 협약이 다루는 분야의 국제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전문 기구 및 기타 UN 기관은 자신들의 임무의 범위(분야) 내에서, 본 협약의 조항 이행을 고려한 대표성을 가질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전문 기구 및 기타 유관 단체를 초청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각각의 조직이자 조직의 임무 범위 및 분야의 전문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전문 기구 및 UN 기관에게 역시 자 조직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본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할 때, 각각의 보고 지침(보고 요령), 제안 및 일반 권고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타 기구의 역할과 중복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위원회는 적절한 형태로, 국제 인권 협약하의 관계 기구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

39조 - 위원회 보고

- 위원회는 총회 및 경제 사회 이사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에 한번씩 제출해야 하며, 당사국 정부에서 수령한 보고서 및 정보를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 및 일반 권고안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제안 및 권고에 대해 당사국 정부의 코멘트가 있다면, 제안 및 권고안 제출시 이 코멘트도 함께 전달, 보고되어야 한다.

40조 - 당사국 회의

- 본 협약의 이행 관련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당사국 정부는 당사국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 본 협약의 발효 이후 늦어도 6개월 안에, UN 사무총장이 주재한 당사국 정부 회의가 열려야 한다. 후속 회의는 2년에 한 번 혹은 당사국 회의의 결정에 따라 UN 사무총장의 주재하에 개최되어야 한다.

41조 - 기탁

UN 사무총장에게 본 협약을 기탁해야 한다.

42조 - 서명

본 협약은 뉴욕의 UN 본부에서 모든 국가 및 지역 통합 기구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43조 - 법적 효력에 대한 동의

본 협약은 본 협약에 서명한 국가의 비준 및 서명한 지역 통합 기구의 공식적 인준의 대상이어야 한다.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 및 지역 통합 기구가 가입을 원할 경우, 이러한 가입에 대해 개방되어야 한다.

44조 - 지역 통합 기구

- 지역 통합 기구이란, 특정 지역의 주권 국가로 구성된 기구로서, 해당 기구의 회원 국가가 본 협약이 다루는 문제와 관련해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본 협약이 다루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위임 받은 권한 정도까지, 자 기구의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를 통해 공식적인 인준 및 가입에 대해 선언해야 한다. 또, 후속적으로는, 권한의 정도에 내용적인 수정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 수정 사항의 기탁에 대해 알려야 한다.

2. 본 협약에서 언급한 '당사국 정부(State Parties)'와 관련된 사항은 지역 통합 기구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3. 45조 1항 및 47조 2항과 3항의 목표를 위해, 지역 통합 기구가 기탁한 어떤 법률 문서도 문서 수로 셈해져서는 안된다.(shall not be counted)
4. 지역 통합 기구는 기구의 권한 범위 내의 문제에 있어, 당사국 정부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구 중 본 협약의 당사국 회원 국가의 수 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있다. 이러한 조직은 회원 국가 중 한 국가라도 투표권 행사를 하게 될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이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이 기구 회원 국가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91조 - 조14

45조 - 발효

1. 본 협약은 UN 사무총장이 20번째 비준서 혹은 가입서를 보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20번째 가입서 혹은 비준서의 기탁이 이루어진 후,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 혹은 지역 통합 기구에 대해, 본 협약은 이 국가 및 기구의 비준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국가 및 기구에 발효된다.

192조 - 조15

46조 - 유보

1. 본 협약의 목표 및 목적과 상충되는 유보 사항은 승인될 수 없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193조 - 조16

47조 - 수정

1. 어떤 당사국 정부라도 UN 사무총장에게 본 협약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제출할 수 있다. UN 사무총장은 제안 받은 해당 수정안을 당사국 정부와 논의하고, 당사국 정부에게 해당 수정안 고려 및 관련 결정을 내리는 당사국 정부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견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최소한 3분의 2이상의 당사국 정부가 관련 당

사국 정부 회의 개최에 찬성하게 되면,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4개월 내에 UN 사무총장은 UN의 후원을 받아 당사국 정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참석 및 투표에 참가한 당사국 정부의 3분의 2이상이 해당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승인을 위해, UN 사무총장은 이를 UN 총회에 제출해야 하며, 수정안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모든 당사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 조항의 1항에 의거해, 채택되고 승인된 수정안은, 수정안 채택 시점에서 수정안을 법률 문서로 기탁한 당사국의 수가 총 당사국의 3분의 2에 다다르면, 이후 30일이 지난고 나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수정안의 기탁 이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당사국 정부에게 해당 수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수정안을 수락한 당사국 정부에게만, 수정안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3. 당사국 정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면, 34조, 38조, 39조 및 40조와 독점적으로 관계가 있는 본 조항의 1항에 근거해 채택되고 승인된 수정안은, 기탁된 수락 법률 문서의 수가 수정안 채택 시점의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다다른 이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48조 - 폐기 통보

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의 폐기에 대해 UN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보를 할 수 있다. 해당 당사국의 협약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부터 효력이 있다.

49조 - 접근 가능한 형식

본 협약의 문서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50조 - 정본

본 협약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문서는 모두 동등한 정본으로 간주된다.

각 국 정부의 정식 인증을 받아, 하기의 전권 위임의 증거로써, 본 협약에 서명을 한다.

부록 5

국내 인권 관련 단체

◎ 인권일반

- 천주교 인권위원회 <http://www.cathrigat.or.kr>
- 민주주의·사회운동-NGO자료관 <http://www.demos.or.kr>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
- 다산인권센터 <http://www.rights.or.kr>
- (사)좋은 벗들 <http://www.jungto.org/gf>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
- 인권운동 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 자유권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hrights.or.kr>
- 지문날인 거부 운동 <http://fprint.jinbo.net>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http://www.ugh.or.kr>

◎ 사회권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http://antiwto.jinbo.net>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http://www.615.or.kr>
- 노동인권회관 <http://www.inkwon.or.kr>
- 문화연대 <http://www.cnrc.or.kr>
-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http://www.yolsa.org>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http://www.ccdm.or.kr>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http://www.nadrk.org>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http://www.professorner.org>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http://www.pssp.org/index.php>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http://www.jcmk.org>
-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junnong.org>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 전국빈민연합 <http://www.nojum.org>
- 전태일기념사업회 <http://www.juntaeil.com>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http://catholicngo.net>
- 한국비정규직노동자센터 <http://www.workingvoice.net>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http://myr.jinbo.net>
- 서울여성노동조합(여성노동가상법정) <http://www.womencourt.or.kr>

◎ 소수자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 일하는여성들의네트워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nnet.org>
- 동성애자인권연대(동성애자친목&인권모임) <http://outpridekorea.com>
- 동성애자웹진(버디) <http://www.buddy79.com>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 기타

-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CNPK) <http://www.peacekorea.org>
- 제주4.3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4.3도민연대) <http://www.cheju43.org>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http://sofa.jinbo.net>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http://www.kcbl.or.kr>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http://witness.peacenet.or.kr>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www.usacrime.or.kr>

❖ 그 외 단체

- 진보네트워크(참세상) <http://www.jinbo.net>
- 정보통신연대 <http://inp.or.kr>
- 시민운동정보센터-민간단체 DB 검색 제공 <http://www.kngo.net>
-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 대안학교 학교 밖 교육관련 기관

- 간디중학교(제천) <http://user.chollian.net/~gandhis>
- 변산공동체(전북 변산) 전화:063-584-0584(홈페이지 없음)
- 실상사 작은학교(전북 남원) <http://www.jakeun.org>
- 간디고등학교(경남 산청) <http://user.chollian.net/~gandhis>
- 꽃우물 대안학교(경기 안산) <http://withlive.or.kr>
- 하자 작업장 학교(서울 영등포) <http://school.haja.net>
- 난나공연예술아카데미(서울 강북) <http://www.nanna.seoul.kr>
- 마루(서울 YMCA 문화공간) <http://www.maroo.or.kr>
- 미지(서울 청소년 문화센터) <http://www.mizy.net>
- 민들레 사랑방 <http://sarangbang.activelearning.or.kr>
- (사)부스러기 사랑나눔회 <http://busrusy.or.kr>
-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http://activelearning.or.kr>

❖ 청소년·학생 관련 단체

- 스스로넷미디어학교 <http://mediaschool.co.kr>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http://www.heemang21.net>
- 전국중고등학생연합 <http://culb.sayculb.com/@union10>
- 중고등학생복지회 <http://member.hitel.net/~k2sws>
- 청소년독립신문 바이러스 <http://www.1318virus.net>
-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http://www.pumdongi.org>
- 청소년인권동아리 타래 <http://home.freechal.com/tarae>
- 청소년 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main/default.asp>
- 학교폭력상담전문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http://www.wangtta.com>
- 청소년상담센터 <http://www.ttax.net>
- 서울특별시 청소년 쉼터 <http://www.youthzone.or.kr>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http://211.111.176.39/aha>

·10대 독립 아이두 <http://www.idoo.net>

·전교조 서울지부 참실위원회 학생자치활동지원국 <http://dongmaru.ktu.or.kr>

❖ 교육운동 단체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http://www.edungo.or.kr>
- 범국민교육연대 <http://eduright.net>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http://www.edu4all.kr/>
- 대안교육연대 <http://psae.or.kr>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eduhope.net>
(경북지부 <http://chamkb.eduhope.net>)
- 학벌 없는 사회 <http://antihakbul.org>
-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 <http://goodbyehakbul.org>
- 인터넷시민도서관 <http://www.1000books.com>
- 월간 우리교육 <http://www.uriedu.co.kr>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http://hakbumo.or.kr>
- 평등사회를 위한 전국학부모회 <http://parents.jinbo.net/>

한국의 유일한
국제화된
한국어 학습
교재로
세계 100개
국가에
판권이
수여되었으며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한
한국어
교재입니다.

한국어 학습
교재로
세계 100개
국가에
판권이
수여되었으며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한
한국어
교재입니다.

한국어 학습
교재로
세계 100개
국가에
판권이
수여되었으며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한
한국어
교재입니다.

한국어 학습
교재로
세계 100개
국가에
판권이
수여되었으며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한
한국어
교재입니다.

한국어 학습
교재로
세계 100개
국가에
판권이
수여되었으며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한
한국어
교재입니다.

한국어 학습
교재로
세계 100개
국가에
판권이
수여되었으며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한
한국어
교재입니다.

한국어 학습
교재로
세계 100개
국가에
판권이
수여되었으며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한
한국어
교재입니다.

한국어 학습
교재로
세계 100개
국가에
판권이
수여되었으며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한
한국어
교재입니다.

한국어 학습
교재로
세계 100개
국가에
판권이
수여되었으며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한
한국어
교재입니다.

한국어 학습
교재로
세계 100개
국가에
판권이
수여되었으며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한
한국어
교재입니다.



경북 구미시 광평동 456-8번지 창평빌딩 7층

☎ (054) 462-7367 / Fax : (054) 464-7363